귀화허가 신청서

국적법 근거규정 조 항 호 (상세)

※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4쪽 중 제1쪽)

(本) 대한법률구조공단

접수번호	접수일 접수	접수일 접수자 확인자		
	현재 국적	출생지(국가 및 .	도시명)	
	성명(한글)	'	성별 [] 남	사 진
	(한자)			3.5cm×4.5cm
신청인	성명(외국명)	외국인등록번호		(모자 번응 상반시으로 된 그런 없이 상개된 이내
인적사항	전화번호 (휴대폰) (자택) (배우	자 등)	다그라고이 (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전자우편(E-mail)			
	주소			
	예정 등록기준지			
댉홛밁禿	외국인 등록일 : 년	월 일	부터 현재까지(총	년 개월)
들이 나는	[] 미혼 [] 기혼(혼인신고일:	년 월 ⁽	일) [] 이혼 [] 배우자 사망(실종)
혼인사항	현 배우자 사이의 출생자녀는 명	이며 현재 [] 양육 [] 미양	육 []양육예정
가족 국적	아버지 (어머니 () 배우	자 ()
입양 여부	[] 아버지에 입양됨	[]어머니에	입양됨 []입양	양되지 않음
특별공로	[] 독립유공 [] 국가유	공 []국역	익기여 []기	타()
수반취득	만 19세 미만의 자녀 ()명에 대] 신청하지 않습니다.
1. 「국적	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	를 신청합니다.		
2. 만약 구	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1년 내에	현 국적의 포기절	차 등을 마치겠습니다.	
3. 기재내	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	귀화허가 불허 또	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	? 감수하겠습니다.
4. 신원조	회 등 귀화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	성서에 기재된 개인	정보를 활용하는 것에	동의합니다.
			년	월 일
		신청인 (법정대리	인)	(서명 또는 인)
법무부	장관 귀하			
첨부서류	3쪽 참조			수수료
д г ч п	V 1 U			3쪽 참조



	지어 (직장명) (소재지) (재직기간) (전화번호)									_											
		직업		(직장명)		(소개	^()				(재역	기간	')			(건-	라인.	오)			
		월 평균	소득약 만원	1	상세니	ዘ용															
생겨	유지	부동산		만원	종류 ! [] 7	다가	[] [런서		[] 월	실세		[] 기E	타())
10	·력	금융재선	<u>.</u> ł	만원	종류 [] 0	예적금(<u>.</u>	원)		[]	잔고	(원))	[] 기E	타())
		기타재신	<u>.</u>	만원	종류																
가족(배우자 등)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							∦용														
※ 본국	※ 본국,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(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사실 포함).																				
	구분 범법 장소	일자		위반니	내용(죄명)							처	분결	과						
							[] 수/] 벌급		대판)	중 원)	[] :	기소 집행	유예 유예	[(년		징역(^{월)} [년]	! 월) 기타	
ніні	대한 민국] 수/] 벌 ;		대판)	중 원)	[기소 집행				징역(^월) [년]	! 월) 기타	
범법 사실		위반사실	이더 9	기 있는 경우 그 내용																	
Me	본국 또는 제3국						[] 수/] 벌;		대판)	중 원)	[기소 집행				징역(^{월)} [년]	! 월) 기타	
] 수/] 벌 ;		대판)	중 원)	[기소 집행				징역(^월) [년]	! 월) 기타	
		위반사실	이더였	있는 경우 =	1 내용																
※ 신청	본인의 .	모든 가족을	을 기재합	니다.																	
		관계	성	명	국적	생년	월일	성'	趋	(국니	┤주⊼ 내거주	자		·거 · 덕 보			수반: 신청	취득 성자		북한 서주자	
									연락처))	(해당란에 √표)						
		아버지																	_		
		어머니																	_		
가	족	배우자																			_
		자녀																	-		_
		자녀																	_		_
		자녀														-			_		_
		자녀																	_		_
																			-		_
						<u> </u>										<u> </u>	_		<u>L</u>		_
(위에	연고자 기재한 ² 제외)	관계	성	평	국적	생년	월일				거 ²	우지 						연락	저 		
기국도 계속)																					



학 력	년	월	일	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
	년	월	일	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
	년	월	일	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
	년	월	일	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

- 1.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- 2. 일반귀화허가 신청자(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). 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3 호를 적용합니다.
 - 가.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(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)
 - 나.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(예금·적금·증권 등) 증명 서류
 - 다.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
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3. 간이귀화허가 신청자(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). 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. 가.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(예금·적금·증권 등) 증명 서류
 - 나.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
 - 다.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
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)
- 4.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- 5.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인 제출서류
- 6.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제적등본(「국적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7.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「국적법」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8.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「국적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9.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. 다만,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.
- 10. 한국인 배우자의 기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,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11.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,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12.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13. 「국적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- 14.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
- 15. 본국(해외) 범죄경력증명서(미성년자, 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)
- 1. 외국인등록사실증명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)
- 2. 출입국사실증명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) 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3. 건물등기사양증명서 4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
- 5.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(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)
- 6.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(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)

- 수수료1인당 30만원
- 수수료 면제
- 수반취득자
- 「국적법」 제7조제1항 제2호 해당자 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후손 등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처리절차 심사 귀화필기시험 \Rightarrow 신청서 제출 접수 결정 통보 면접심사 체류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 등 사무소장 사무소장(출장소장) 신청자 법무부장관 (출장소장) 및 법무부장관